

2019년 ‘추석 명절 청렴주의보’ 발령

<2019. 8. 23. / 감사실>

■ ‘청렴주의보’란?

- 명절, 휴가철, 선거 등 취약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·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·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을 도모

○ 발령내용 : ‘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’ 금지

○ 발령기간 : 2019. 8. 26. ~ 9. 15.

○ 관련규정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- 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(금품 등의 수수 금지)
- 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(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)

○ 금품등의 수수 금지(위반행위에 대한 제재)

- 직무 관련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
 - ⇒ 과태료(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)
-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
 - ⇒ 형사처벌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
○ 금품 등 수수시 대응조치

- 반환 혹은 거부의사 표시와 함께 지체없이 신고

※ 관련사항 문의 또는 상담은 감사실(02-2157-108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